

원하청 안전 교섭하랬더니 로봇개 푼 현대제철

현대제철 ‘비정규직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미이행

노조 동의 없이 로봇개 투입, 9월 붕괴사고 막지 못해

노조 “현장 안전 개선하려면 즉각 원청 교섭 응해야”

개요

- 제목: 위험의 외주화, ‘교섭’ 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9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손잡고,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 주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박홍배 의원실
- 순서:
 - 사회 | 진환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국장
 - 여는말1 | 이용우 국회의원
 - 여는말2 | 박홍배 국회의원
 - 규탄발언 | 엄상진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
 - 현장발언 |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개인정보보호 및 인공지능기본법 위법 규탄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안영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 ※ 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 이용석 010-5739-8489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 010-2732-2318

○ 위험의 외주화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은 하지

않고 최근 ‘로봇개’ 를 노동자 동의 없이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김용균,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현장에서 최근 사용자가 안전 인력 충원 없이 ‘이동식 감시카메라’ 를 설치해 사회적 비판이 쏟아졌는데, 현대제철에서는 아예 움직이는 로봇개로 노동자 감시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속노조가 확인한 결과 로봇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냉연 공정 작업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로봇개는 영상 촬영 장치를 달고 수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노조에 대한 동의는 없었습니다.
- 현대제철이 지난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로봇개는 공장 안전을 위해 2냉연 104개소를 24시간 움직입니다. 안전을 위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 9월 당진공장에서는 원료공장 TT30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노동자들은 ‘운이 좋아서 살았다’ 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동의 없이 투입된 로봇개의 목적이 안전인 건지, 작업자를 감시하는 동시에 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무엇보다 현장 안전을 지키겠다면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와 교섭하고 개선하면 될 일입니다. 지난 7월 법원도 현대제철 원청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원청이 교섭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면 되는데 원청은 여전히 하청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교섭 대신 로봇개를 택한 원청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금속노조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에서 포착된 로봇개 실상을 폭로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원청 교섭을 재차 촉구할 예정입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쓰러지지 않도록,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로봇개 현장 영상 및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장창열)은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종 전반과 판매, 서비스와 같은 유관 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단위 전국 단일 산별노동조합입니다. 2001년 2월 8일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걸쳐 19만 명의 조합원을 품은 한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입니다. 금속노조는 14개 지역지부와 6개 기업지부로 구성되어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여부와 관계 없이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속노조 및 노동 담당 기자는 메일링리스트 등록, 텔레그램 채널, kmwu.kr 금속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현대제철(당진) 원료공장 붕괴사고 개요

「사고개요」

- 1) 일시 : 2025.09.06.(토) 21:28 경
- 2) 장소 : 원료공장 TT-30 (TT : 트랜스퍼타워 / 벨트 컨베이어 원료이송 방향을 전환해주는 설비가 있는 타워)
- 3) 내용 : 철광석을 이탈된 장소에 떨어뜨려 철광석 누적에 따른 드롭 슈트 및 케이블 트레이 탈락 등으로 바닥 데크 붕괴
- 4) 원인 : 드롭 슈트 부식 및 리미트스위치 작동불량
- 5) 경과 :

25.09.06. 21:28	붕괴사고 발생
25.09.10 11:00	사고현장에 전기정비업무 투입(하청노동자) / 지회 사고상황 접수
25.09.11 16:00	지회 사고 접수 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사고신고 후 사고현장 실사
25.09.11 22:00	지회 부지회장이 현장 재실사 후 작업중지권 발동 ※ 붕괴위험이 해소되지 않아 2차 재해 발생이 다분한 현장에 하청노동자들을 강제로 투입
25.09.12 01:00	협력업체 대표 작업중지권 무력화 시도 / 지회 작업중지권 유지
25.09.12 03:00	이후 사내협력사 관리자들이 점검업무에 투입됨
25.09.12 14:00	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사고현장점검 개시 ※ 동종, 유사설비의 부식 및 노후화 문제는 파악조차 되지 않음. 즉,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아 재해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6) 원료공장 사고 요점

- ① 설비노후화에 따른 전도, 낙하 등 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하청노동자가 현장개선을 요청하여도 개선이나 설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0년 이후 중대재해(사망) 4건, 더불어 20년 ~ 24년 기간, 전도 12건/협착 6건/ 충돌 11건/ 추락 5건 등이 발생함)
- ② 붕괴사고 이후 해당 구조물과 설비에 대한 사고 상황전파와 검증된 안전진단, 위험성평가 등을 실행하지 않고 붕괴사고 구간의 복구작업과 해당 구조물 3~5층의 점검업무에 투입 지시함. 즉,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조건에서 하청노동자를 업무에 투입함

7) 사고사진 :



현대제철 불법행위의 피해노동자들이 김영훈 노동부장관께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첫째, 노조법 가이드라인에 앞서 교섭 선례 발굴의 일환으로 현대제철 원하청 노사교섭을 추진해주시요.

노조법 개정 이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문제에 있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하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이 확인되었고 직접고용시정명령도 받았습니다. 제도적 판정도, 명령도 거부하고 행정소송에 돌입했지만 지난 7월 25일 행정법원 역시 교섭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해당 판결은 8월 노조법 개정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대제철은 노조의 교섭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1) 현대제철 내 산재사고가 최대 10배까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2) 현대제철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멈출 때까지 현장지도를 할 의무가 노동부에 있음에도 노동청 현장지도가 2021년 특별근로감독과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단 한차례, 문서로만 진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법도 제도도 무시하는 현대제철이야말로 노조법 개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동부의 역할을 드러낼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가운데 소급적용되지 않는 2의 2(사용자책임), 5(노동쟁의), 3조 2(사업장불법)'까지 두루 포함되는 사업장이 현대제철 사례입니다. 파견법위반, 산업재해 교섭의무 거부 등 원청의 불법행위로 노동안전 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안이 있고, 대규모 대공장, 협력업체 16개를 가진 원하청 사례이므로 정부가 주선해 원하청교섭 성공사례로 이끌어주신다면, 다른 사업장에도 선례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현대제철의 불법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김영훈 장관님의 현장시찰 및 특별근로감독 재감독 등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즉각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이 제도적 명령과 법 이행을 거부하는 동안 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2024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만 확인된 중대재해 사망 건만 5건(2025년 미집계)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정한 같은 공정 반복사고도 309건에 달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주시하는 끼임 78건, 낙하 33건, 온열 16건 등 확인된 사고만 총 휴업사고 637건, 비휴업사고 1503건 등 2천건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심각합니다.

가장 최근 노동청에 접수한 바 있는 9월 5일 '붕괴사고'는 천운으로 인명피해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에서 현대제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안전적합성 검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은 사고현장에 하청노동자들을 투입시킨 것이었습니다. 노동청 사고 접수 이후에도 하청노동자의 사고 현장 투입을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섭을 거부한 채 '로봇개' 투입 등 현실성 없는 비용만 고집하는 현대제철은 스스로 안전을 담보할 의지도 자정능력도 없습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절실합니다.

현대제철이 법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노동자들의 안전은 누구도 담보하지 못 합니다. 파견법 위반, 교섭거부에 대해 즉각적인 대책으로 '특별근로감독 재감독 실시', '김영훈 장관의 현장 시찰' 등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셋째,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전수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노동부 판단과 법원 판결에 현저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긴 지 1년이 훌쩍 넘는 지금까지도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견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2018년에 이어 2022년에도 연이어 나오고 있고, 같은 시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순천에서는 이미 직접고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판정과 행정법원 1심 판결 모두 현대제철의 불법을 인정했지만, 검찰만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반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저항한 2021년 파업에 대해서는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해 검찰은 최대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실시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조사위는 파견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 기소 지연, 불기소처분 등을 검토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부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조사 필요성과 개선 노력을 권고했습니다.

즉, 노동부-검찰 등 전방위적인 조사가 없이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멈추고 현 장의 안전과 합법을 담보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은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확인한 셈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업들도 알고 있기에 사실상 '대법원 판결까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태도를 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제철에 대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동권 행사 외에 없지만 하청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의행위가 아닌 현대제철이 법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것으로 역할을 멈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대제철의 법 이행을 방조하는 검찰의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면밀히 상호견제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토 및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회신처 :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010-3431-6930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공장을 홍보하는 로봇개는 AI강국에서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정부와 산업계가 한 목소리로 AI강국을 외치는 목소리가 드높은 때입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 도입되는 첨단 인공지능 로봇 기기가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노동 현장에 첨단 감시 기술을 도입하면서 노동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올해 9월 ILO가 펴낸 신규 보고서(*)에서는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거스르는 첨단 디지털화가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보주체이자 자신의 안전과 인권에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 노동자와 협의하거나 심지어 알리지도 않는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공장 로봇개와 같이 사람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공공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 위험을 더욱 키웁니다.

현대제철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이 로봇개는 "진짜 무인 시스템"으로서, 노동자 작업시간 중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율주행으로 공장을 홍보합니다. 이 로봇개를 도입한 취지는 "공장 안전을 위한 무인 순찰 시스템의 핵심"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회사를 홍보하는 홈페이지 미디어룸에서 로봇개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회사가 마땅히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회사가 로봇개와 같은 위험 설비를 도입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같은 시간과 공간에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로봇개는 본래 군사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산업시설에서도 충분히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될까요? 공장 안전을 위한 순찰을 한다고 하지만 이 로봇개가 새로운 안전 위험을 야기할 부분은 없을까요? 이 로봇개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는 순간에 회사나 위험에 처한 사람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당사자 노동자에게 설명하고 도입 여부를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봇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측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자를 감시하는 설비들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이 장비에 대하여 알리거나 도입 여부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동자는 회사가 공개한 조각 정보에 의지해 문제를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로봇개의 AI 시스템과 CCTV가 연동돼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이동형 기기가 촬영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만약 로봇개가 개인의 얼굴을 식별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면 민감정보처리에 따른 노동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 로봇개에 얼굴인식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될 예정인지 알수 없습니다.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노동자들의 친분관계를 나타내는 행동을 녹화하거나 대화 녹음이 가능하다면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감시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공장을 활보하는 로봇개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현재 하위법령이 준비중인데, 이처럼 공장에 도입되는 기계류나 산업안전 관련 장비의 경우 당연히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로봇개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원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인간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관련 문서는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로봇개를 도입한 회사의 산업안전에 대한 접근법에 있습니다. 산업안전을 위한 명분으로 도입되는 설비가 오히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제철은 노동자들과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나 판정에 충실한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처럼 일방적인 태도로 도입하는 첨단 장비는 현장 노동자에게 또다른 위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는 첨단기술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대상으로 전락할 뿐이니까요.

현대제철은 지금이라도 로봇개와 관련된 정보를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 노동자를 과도하게 감시하고 노동권 행사를 위축시키며 시공간 제약 없이 노동현장에서 사람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자율주행 로봇개의 운영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재명정부는 현재 준비중인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공장내 자율주행 로봇을 고위험으로 지정하고 규제하는 한편, 노동자의 감정이나 생체정보를 처리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 ILO. (2025). Navigating workers' data rights in the digital age: A historical, current, and future perspective on workers' data protection. ILO Working Paper 149, September 2025.

(**) <https://moment.hyundai-steel.com/moment-detail/50081>

현대제철 불법행위의 피해노동자들이 김영훈 노동부장관께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첫째, 노조법 가이드라인에 앞서 교섭 선례 발굴의 일환으로 현대제철 원하청 노사교섭을 추진해주시요.

노조법 개정 이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문제에 있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하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이 확인되었고 직접고용시정명령도 받았습니다. 제도적 판정도, 명령도 거부하고 행정소송에 돌입했지만 지난 7월 25일 행정법원 역시 교섭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해당 판결은 8월 노조법 개정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대제철은 노조의 교섭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1) 현대제철 내 산재사고가 최대 10배까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2) 현대제철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멈출 때까지 현장지도를 할 의무가 노동부에 있음에도 노동청 현장지도가 2021년 특별근로감독과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단 한차례, 문서로만 진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법도 제도도 무시하는 현대제철이야말로 노조법 개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동부의 역할을 드러낼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가운데 소급적용되지 않는 2의 2(사용자책임), 5(노동쟁의), 3조 2(사업장불법)'까지 두루 포함되는 사업장이 현대제철 사례입니다. 파견법위반, 산업재해 교섭의무 거부 등 원청의 불법행위로 노동안전 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안이 있고, 대규모 대공장, 협력업체 16개를 가진 원하청 사례이므로 정부가 주선해 원하청교섭 성공사례로 이끌어주신다면, 다른 사업장에도 선례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현대제철의 불법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김영훈 장관님의 현장시찰 및 특별근로감독 재감독 등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즉각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이 제도적 명령과 법 이행을 거부하는 동안 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2024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만 확인된 중대재해 사망 건만 5건(2025년 미집계)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정한 같은 공정 반복사고도 309건에 달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주시하는 끼임 78건, 낙하 33건, 온열 16건 등 확인된 사고만 총 휴업사고 637건, 비휴업사고 1503건 등 2천건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심각합니다.

가장 최근 노동청에 접수한 바 있는 9월 5일 '붕괴사고'는 천운으로 인명피해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에서 현대제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안전적합성 검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은 사고현장에 하청노동자들을 투입시킨 것이었습니다. 노동청 사고 접수 이후에도 하청노동자의 사고 현장 투입을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섭을 거부한 채 '로봇개' 투입 등 현실성 없는 비용만 고집하는 현대제철은 스스로 안전을 담보할 의지도 자정능력도 없습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절실합니다.

현대제철이 법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노동자들의 안전은 누구도 담보하지 못 합니다. 파견법 위반, 교섭거부에 대해 즉각적인 대책으로 '특별근로감독 재감독 실시', '김영훈 장관의 현장 시찰' 등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셋째,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전수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노동부 판단과 법원 판결에 현저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긴 지 1년이 훌쩍 넘는 지금까지도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견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2018년에 이어 2022년에도 연이어 나오고 있고, 같은 시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순천에서는 이미 직접고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판정과 행정법원 1심 판결 모두 현대제철의 불법을 인정했지만, 검찰만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반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저항한 2021년 파업에 대해서는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해 검찰은 최대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실시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조사위는 파견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 기소 지연, 불기소처분 등을 검토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부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조사 필요성과 개선 노력을 권고했습니다.

즉, 노동부-검찰 등 전방위적인 조사가 없이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멈추고 현 장의 안전과 합법을 담보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은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확인한 셈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업들도 알고 있기에 사실상 '대법원 판결까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태도를 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제철에 대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동권 행사 외에 없지만 하청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의행위가 아닌 현대제철이 법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것으로 역할을 멈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대제철의 법 이행을 방조하는 검찰의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면밀히 상호견제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토 및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회신처 :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010-3431-6930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